

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님!

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제4선거구,

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김재형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,

서울시 및 자치구가 운영하는 근린공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포함한
응급의료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○ 현행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면 여객 항공기, 공항, 철도 객차,
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포함한
응급의료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하지만 서울시와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는 근린공원의 경우 이용객이 많은 대표적인 다중집합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포함한 응급의료장비를 갖추지 않은 곳이 다수 존재합니다.
- 또한 주민센터, 학교, 복지시설 등 건물 내부에 응급의료장비를 갖춰놓는 곳의 경우 직원들의 근무시간 외에는 주민들이 해당 장비를 사용하기 쉽지 않은 바, 항상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여 시민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이에 「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포함한 응급의료장비를 근린공원에 설치 및 관리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시민들이 응급의료장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